

# 건설추진위원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건설추진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건설추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둔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무처장, 간사는 건설추진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 1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2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4조 (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5조 (의결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, 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7호 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